로더 버킷에 탑승하여 작업 중 떨어짐

재 해 개 요

'16. 6월 경기도 안성시 소재 레미콘 생산 사업장에서 피재자가 로더의 버킷에 탑승하여 와이어로프 설치작업 후 하강하던 중 약 4미터 아래 지면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

재해상황도





기인물(로더)

재해상황도

재해발생상황

- 재해는 사일로와 모래 야적장 사이에 설치될 PE배관을 지지하기 위한 와이어로프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발생
- 피재자는 다른 작업자가 운전하는 버킷에 탑승하여 버킷을 약 4미터 상승 시킨 후 지상에서 약 5.6미터 지점의 와이어로프 결속작업을 실시함
 - 결속작업을 마친 후 로더를 하강시켜 내려오던 중 로더 차체의 진동, 버킷의 흔들림 등으로 몸의 균형을 잃고 지면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

※기인물(로더)

- 총중량 : 25,258kg -제조년월 : 2004.4 버킷용량 : 4.7^{m³}
- 피재자는 작업중에는 안전대를 착용했으나, 작업을 마친 후에는 내려오기 위해 안전대를 해체함

재해발생 원인

○ 로더는 차량계 건설기계로 토사나 골재를 적재 및 운반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나, 고소작업을 위하여 로더의 버킷에 탑승하여 추락위험이 있는 상태로 작업을 실시함

동종재해 예방대책

- 로더는 토사나 골재를 적재 및 운반하는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고,
 - 고소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 등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고소작업대 등 전용설비를 사용하여야 함
-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됨

관련 법규

- ▶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
 -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[작업발판의 끝·개구부 등을 제외한다] 또는 기계·설비·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▶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2조(승차석 외의 탑승금지)

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.

▶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(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)

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